

포스코그룹 및 1·2·3차 협력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등 5개 회사(이하 "협약 대기업"이라 한다)와 협약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하 "1차 협력사"라 한다), 협약 대기업의 2차 협력사(이하 "2차 협력사"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협약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및 3차 협력사 중소·중견사(이하 "3차 협력사"라 한다)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협약 대기업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면서 각 거래 단계별로 상생협력 문화가 원활히 확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위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기업의 실천사항) 협약 대기업은 1차 협력사,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협력사 대금은 전액 현금(현금성 결제 포함)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위 대금 지급 원칙이 1, 2, 3차 협력사로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 대금지급 수단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이 1, 2, 3차 협력사로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1차 협력사에게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1차 협력사가 2, 3차 협력사와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 협력사에 대한 금융, 기술, 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전개한다.
- 협력사의 의견을 지속 청취, 반영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제3조(1차 협력사의 실천사항) 1차 협력사는 2차 이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2차 협력사 대금 지급조건 개선 및 상생결제 확산

- 2차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2. 협약 대기업을 위한 2차 협력사 지원 실행 협조

- 2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 기술, 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전개한다.

제4조(2차 협력사의 실천사항) 2차 협력사는 3차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3차 협력사 대금 지급조건 개선 및 상생결제 확산

- 3차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2. 협약 대기업을 위한 3차 협력사 지원 실행 협조

- 3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 기술, 경영지원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전개한다.

제5조(공정위의 실천사항) 공정위는 협약에 참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조건 개선에 따른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제6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는 위 각 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위 각 조의 내용이 적극 추진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것임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별첨 : 부속서 1부 (협약 대기업별 세부실천사항 등)

2026년 7월 16일

〈 협약 서명란 〉

[협약 대기업]

포스코
대표이사 이 희 근

[1차 협력사 대표]

조선내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광 철

[2차 협력사 대표]

이현기업
대표이사 이 광 섭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 계 인

주식회사 나인와트
대표이사 김 영 록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송 치 영

여흥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 진 홍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엄 기 천

한승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수

주식회사 디케이케미컬
대표이사 김 도 균

포스코DX
대표이사 심 민 석

주식회사 서번텍
대표이사 황 영 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협약 대기업체 세부실천사항

□ 포스코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 거래사의 안정적 대금 확보 기회 창출 위해 월 3회 이상 대금 지급 실시
- 안정적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 상생결제시스템 등 활용 현금 및 상생결제 비율 100% 달성 노력
- 상생결제시스템 등 활용 현금성 결제 비율 100% 달성 노력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 2차(3차)사와 공정거래협약 맺은 1차사에 SRM(공급망) 평가 인센티브 제공
- 2차(3차)사와 편리하게 공정거래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지원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 금융(자금) 지원
 - 직접지원 : 공동근로 복지기금 무상 출연 등
 - 혼합지원 : 동반성장펀드(저리대출, 철강ESG상생) 출연
 - 특별지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사업 출연
 - 간접지원 : 기업은행 네트워크론, 중소기업공단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성과공유제 운영과 공동특허 지원
 -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통해 1차와 2차, 3차 협력사 간 기술개발 적극 지원
- 인력·채용 지원
 - 협력사의 요청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
 - 협력사의 인력채용 지원을 위한 직무훈련 지원
 - 채용박람회 등을 통한 협력사 인력채용 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협력사 고용 인력에 대한 지원 (협력사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훈련 실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 직·간접적 경영 지원

- 우수 협력사 계약 우대 및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
- 설비구매 선금금 및 중도금 지급
- 지역업체 입찰기회 확대
- 전자입찰 비율 100%
- 고액 자재품 등 자재구매 선금금 지급
- 품목 특성에 따라 저가 제한 낙찰제, 시장가 경쟁 낙찰제 운영
- 포스코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 교육
- 포스코그룹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판로 개척지원

□ 포스코인터내셔널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 지급조건 :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 결제방식 : 전액 현금 지급(100%) 원칙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 노력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 공정거래 CP 지원
 -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참여사 맞춤형 컨설팅, 자료공유, 작성법 안내 등
- 법무 지원
 - 법무실 변호사를 지정하여 현장 지원 혹은 서면 검토 등 법무 지원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 해외판로 개척 지원
 - 시장개척단 등 통한 해외 수요처 발굴 및 수출 사업화 지원
 - 유망 해외 수요처 대상 제품·기술 현지 실증 사업 지원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인증 취득 지원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컨설팅 지원
- R&D 및 설비투자 지원
 - 기술개발,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 발굴·지원
 - 생산성 향상 및 공장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 산업안전 수준 제고 지원
 -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호구 및 안전설비 도입 지원

□ 포스코이앤씨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 지급조건 :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익월 10일 공사비 지급
- 결제방식 : 전액 현금 지급(100%)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 체불관리시스템(노무비닷컴) 사용 원칙
 - 동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수령 후 거래처에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지급 (단, 발주자 전용시스템 사용 의무시 예외 적용)

3.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 금융지원
 - 동반성장 • ESG펀드 440억원 조성 :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펀드 조성, 협력사 대상 저리 대출 지원
 - 더불어 상생대출 운영 : 동반성장위원회 및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 협력사 전용 대출 프로그램 운영
 - 노무비닷컴 이용수수료 및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무상 지원
- 기술(개발)지원
 - 공동연구개발(R&D) : 협력사 단독 개발이 어려운 기술 공동 개발
 - 공동특허출원/등록 : 공동 개발 신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 보유기술 이전 : 당사 보유기술 무상 이전
 - 성과공유제 운영 : 공동 기술개발 성과에 따른 수익 공유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안전진단 컨설팅, ESG 평가 및 컨설팅
 - 안전보건 교육훈련,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직 • 간접적 지원
 - 우수 협력사(PHP) 계약 우대 및 계약이행보증 면제
 - 전자입찰 비율 100% 및 지역업체 입찰기회 확대
 - 적정 가격 낙찰제, 시장가 경쟁 낙찰제 운영
 - 명절 자금 조기 집행 및 현장 근로자 장례용품 지원
 - 무채해 최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업체/우수직원 포상
 - ISO(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비용 지원
 - 하도급계약 성능 유보금 전면 폐지

□ 포스코퓨처엠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 거래사의 안정적 대금 확보 기회창출 위해 주 2회 대금 지급 실시
- 안정적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하도급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 상생결제시스템 등 활용 현금 및 상생결제 비율 100% 달성 노력
- 상생결제시스템 등 활용 현금성 결제 비율 100% 달성 노력
- 2차 이하 협력사에 결제전산원 상생결제시스템 사용 확대 제도 마련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 2차(3차)사와 공정거래협약 맺은 1차사에 SRM(공급망) 평가 인센티브 제공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등 동반성장 우수사에 정기 SRM 평가 시 가점 부여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 금융지원(무이자대출, 중진공 네트워크론 저리대출)
- 기술지원 및 기술보호(성과공유제, 2차사 포함 다자간 성과공유제 허용,
특허허여제도, 기술임치제도)
- 공정거래형 입찰제도 운영(저가제한, 시장가경쟁, TCO구매)
- 납품대금연동제 운영
- 우수공급사 제도 운영(동반성장프로그램 우선지원, 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 ESG경영 지원(서면실사 플랫폼, 제3자 현장실사, 교육자료 등 제공)
- 안전예방활동 지원(안전장비 개선비용 지원, 교육지원 등)
- 직·간접적 경영 지원
 - 내부 직무훈련 기관 활용 협력사 전문인력 교육 제공
 - 포스코그룹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판로 개척지원

□ 포스코DX

1. 대금 지급조건 개선

- 모든 하도급 계약의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할 수 있다.
- 매월 대금 지급 횟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8회를 유지한다.
-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대금 지급은 현금성 100%로 집행하며, 주요 공사계약의 경우 상생결제를 통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 지원

- 전기공사 계약의 대금 지급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도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3.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 소싱그룹 등록 평가 시 상생결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하여 평가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4. 1차 협력사 및 2차 이하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 두 개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운영한다.
- 원자재 가격 급등 또는 환율 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시장가 경쟁낙찰제, 저가제한 낙찰제 등 공정거래형 낙찰제를 운영한다.
- 우수공급사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공급사로 선정된 협력사에 대해 보증보험 증권 면제, 협력사 직원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당사와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